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203
----------	-------

발의연월일 : 2023. 7. 12.

발의자 : 유의동 · 유경준 · 이현승

金炳旭 · 이인선 · 장동혁

박성민 · 한기호 · 강기윤

김희곤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 모든 과정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증(이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라 함)을 할 수 있고,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사업자들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크며, 이는 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7월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가 현행 2년의 유효기간이 짧다고 답변한 바 있음.

이에 사업자의 소비자중심경영인증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

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늘리고자 하는 것임.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범정부 소비자정책 총괄부처이자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간사 부처로서 소비자정책에 관한 3년 단위 범정부 기본계획과 1년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비자정책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피해 현황이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환경, 시장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등이 미비하여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함.

이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안 제20조의2제4항)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나. 실태조사 근거 등 마련(안 제81조의2 신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
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받은 사업자로서 이 법 시행 후에도 유효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하여 인증이 유효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 ③ (생략) ④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u>2년</u>으로 한다.</p> <p><u><신 설></u></p>	<p>제20조의2(소비자중심경영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u>3년</u>-----.</p> <p>제81조의2(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리증진이나 소비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소비자단체·사업자·사업자단체와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p>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 해당 실태조사 업무를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국소비자원이나 관계 법인 · 단
체에 위탁할 수 있다.